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

1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개요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았음

명칭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관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담당자 연락처	051-240-7716

2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

위탁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

상담	-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함 - 제공 시간: 월~금 (9:00~17:00), 단 공휴일은 제외 - 제공 방법: 전화(051-240-7716), 온라인, 방문 상담 - 상담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함
교육	-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함 - 방법: 집합교육 - 제공 시기: 연 1회 실시(추가교육 : 위탁기관과 협의 후 실시) - 내용: 연명의료결정법 및 윤리 관련(법률, 작성 대상 및 방법, 이행 절차, 심의 등)
심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상담 중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통계 분석	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심의 절차

- 1) 심의 신청서 작성 : 심의 원하는 협력 요청 의료기관 신청자(위탁기관 의사 또는 위탁 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는 전담인력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 2) 심의 상정서 작성 : 공용윤리위원회 간사는 "심의 상정서(병원 서식)" 작성 후 공용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정(규정의 회의 개최 기준에 의거)
- 3) 심의 회의 개최 : 공용윤리위원회 심의 회의 개최
 -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와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심의 결과 통보
 - 회의개최기준
 -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 개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회의 개최
 - 회의방법
 - 심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음
 - 심의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탁기관 및 심의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하고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함(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

3 협약체결 기준 및 절차

○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

○ 신청절차



○ 제출 서류

협약신청	- 접수처: med_nibplst@nibp.kr - 공문(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 1부.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붙임1] 1부. - 위탁기관 구성 및 주요인력[붙임2] 1부.
협약체결	- 공문(부산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 1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붙임3] 1부. -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붙임4] 2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 협약체결 방법

위탁기관장 및 부산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2부(각 1부씩 보관)

※ 위탁기관은 협약체결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https://intra.lst.go.kr>)에 등록해야 하며,
승인 후 1일 후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4 문의

○ 문의처: 051-240-7716

○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H동 4층 연명의료사무실

5 붙임 서류

- 붙임1.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
- 붙임2. 위탁기관 구성 및 주요 인력
- 붙임3.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 붙임4.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서식1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 귀하

□ 위탁기관 구성 및 주요 인력

가) 위탁 기관명

-

나) 위탁기관

- (병상 수, 호스피스 전문기관 여부)
- (의사 수) 총인원 00명(전문의 00명)
- (조직도)

- (연혁)
 - *
 - *
- (기타)

다) 주요 인력

구분	성명	부서	직위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비고
책임자						
업무 담당자						

라) 연명의료 시술 현황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4가지 의학적 시술 시행 여부를 O/X로 표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마) 연명의료 관련 서식작성 예상 건수(작성 대상 환자 수)

- (작년 사망자 수)
- (말기 환자)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기관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구분	☐ 병원 ☐ 요양병원 ☐ 기타 ()		
진료과목			
의사 수		병상 수	

담 당 자 정 보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협 약 사 항	
협약신청사유	
협약신청기간	협약체결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년

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협약신청의료기관장: _____(인)

부산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

부산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수탁 공용윤리위원회)과 00 의료기관(위탁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

- 가.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
- 나.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다.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라.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 마.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제3조 【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

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 장소,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비용】

공용윤리위원회는 전년도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받은 위탁비용을 통하여 위탁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 유지】

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부산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00 의료기관의 장
